

2022년 강진의료원 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서

1. 의료원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직원이 원할 경우 노사 합의로 1년 범위 내에서 무급 휴직을 부여한다. 라는 내용의 2017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잠정합의서를 이행한다.
2. 제 1항에 따른 무급휴직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가. 휴직기간은 12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, 1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
 - 나. 휴직신청은 개시일 2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한 직군에서 동일기간에 3% 초과 사용할 수 없다.
 - 다. 의료원은 제 가항에 따른 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한다.
 - 라. 무급휴직기간은 호봉 및 경력에 산입하지 않으며, 휴직 종료 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022. 12. 29

전라남도 강진의료원
원장 정기호(인)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진의료원지부
지부장 신경옥(인)